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보행자 난간 설계반영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

내 용

충청남도(○○○○사업소)에서는 2017. 5. 22. ○○○도 ○○시 ○구 ○○로 000에 있는 (주)○○ (대표자 ○○○)와 2개사¹⁾와 국지도00호선 ‘○○~○○IC간 도로건설공사’를 공사부기금액 24,179,085,000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5. 29. 착공하여 2023. 4. 27.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, 지질,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, 새로운 기술·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,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충청남도(○○○○사업소)에서는 국지도00호선 ‘○○~○○IC 도로 건설공사’의 0+054~0+112 좌·우 구간 116m 등 3개 구간 354m의 보행자 난간 공사비는 ‘관급자재설치도’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[표]와 같이 설계내역서에 자재

1) 충청남도 ○○시 ○○대로 0000, 4층에 있는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, 충청남도 ○○군 ○○읍 ○○○로 000-0에 있는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

비와 노무비를 이중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 공사비 134,000,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.

[표] “보행자 난간 이중 계상 내역”

(단위 : 원)

연번	구간	관급자재비 (관급자설치도)			설계내역서 (자재비+노무비)		
		규격	수량	도급액	규격	수량	도급액
			354m	43,542,000		354m	134,000,000
1	0+054 ~ 0+112 (좌, 우)	보행용 난간	354m	43,542,000	보행용 난간	116m	45,314,016
2	1+510 ~ 1+578 (좌, 우)				보행용 난간	154m	58,476,640
3	8+554 ~ 8+895 (좌, 우)				보행용 난간	84m	30,209,344

※ 자료 :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

[시정]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는 보행자 난간 공사비(자재비와 노무비)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134,000,000원 상당을 “감액”하시기 바랍니다.